# 2020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u>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08.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08.1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0.08.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신청불가)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발표	비고
무기한 연기	거주지 동 주민센터		개별통보

-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LH 홈페이지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apply.lh.or.kr→분양·임대 정보→공지사항) 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 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u>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개별안내 해드립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16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sup>\*</sup>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u>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u>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 총 17단지 2,125호

		단지	전용		기존		임대가격(원)				
자치구	단지	규모	면적	세대	대기	모집	수급자	기준	수급자 이오	의 기준	주소
	명	(호)	(m²)	수	자	호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연락처)
	중계3	1,455	26.37	1,325	103	50	2,683,000	52,470	7,543,000	84,880	서울 노원구 덕릉로 662 (중계동) ( <del>2</del> 02-934-2456)
. 017	중계9	2,694	26.37	1,470	95	80	2,636,000	52,470	7,543,000	84,880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노원구	5세9	2,094	31.32	1,164	103	80	3,131,000	62,320	8,959,000	100,810	(하계동) (🙃 02-949-5518)
	월계1	2,298	26.37	1,581	29	200	2,636,000	52,470	7,338,000	82,590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길 15
	2기!	2,230	31.32	717	46	100	3,131,000	62,320	8,715,000	98,090	(월계동) (☎ 02-999-9402)
			26.37	588	55	100	2,636,000	52,470	7,543,000	84,880	
			31.32	540	109	50	3,131,000	62,320	8,959,000	100,810	서울 강 <del>북구</del> 한천로 105길 24
	번동2	1,766	36.54	70	_	30	3,652,000	72,710	10,453,000	117,620	(번동) (☎ 02-987-1462)
			37.08	28			3,706,000	73,780	10,607,000	119,360	
			40.32	540	14	80	4,030,000	80,230	11,534,000	129,790	
강북구			31.32	450	48	30	3,131,000	62,320	8,959,000	100,810	
	번동3	1,292	36.54 37.08	70 28	0	10	3,652,000	72,710	10,453,000	117,620	서울 강 <del>북구</del> 오현로 208
			40.32	450	15	30	3,706,000	73,780	10,607,000	119,360 129,790	(번동) (☎ 02-984-6152)
			36.54	35	15	30	4,030,000 3,652,000	80,230 66,890	11,534,000 10,453,000	108,210	니오 카브크 취치크 44F키 20
	번동5	1,123	37.08	14	4	15	3,706,000	67,880	10,433,000	109,810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번동) (☎ 02-987-3588)
			26.37	1,163	50	110	2,636,000	52,470	7,543,000	84,880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가양	1,998	31.32	835	104	60	3,131,000	62,320	8,959,000	100,810	(가양동) ( <b>a</b> 02-2668-3088)
								·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등촌1	1,670	26.37	1,123	112	200	2,636,000	52,470	12,596,000	153,420	(등촌동) (☎ 02-2658-5000)
71.1.7	강서구 등촌4	1,575	26.37	1,128	44	30	2,636,000	52,470	12,970,000	144,07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59
3시구		,,,,,,	31.32	447	25	20	3,131,000	62,320	14,922,000	161,250	(등촌동) (☎ 02-2658-2077)
	등촌7 1,14	등촌7 1,146	26.37	907	50	80	2,636,000	52,470	12,614,000	148,06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
		.,	31.32	239	42	20	3,131,000	62,320	14,278,000	161,790	(등촌동) (☎ 02-2658-0111)
	등촌9	1,445	26.37	430	75	20	2,636,000	52,470	12,670,000	148,740	서울 강서구 화곡로 63가길 92
	02	,,	31.32	1,015	77	90	3,131,000	62,320	14,341,000	162,500	(등촌동) (☎ 02-2658-8000)
	수서	2,565	26.37	1,699	114	100	2,636,000	52,470	7,543,000	84,880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강남구		7,535	31.32	866	46	40	3,131,000	62,320	8,959,000	100,810	(수서동) ( <b>☆</b> 02-459-1567)
	   강남3	192	21.78	62	9	20	2,100,000	41,790	14,459,000	109,060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3길 22
			29.43	94	5	30	2,831,000	56,520	19,326,000	145,850	(자곡동) (☎ 02-3416-3777)
	서초3	100	26.68	70	2	30	2,537,000	50,630	17,459,000	124,280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서초구	- 1	100	33.11	30	15	10	3,158,000	62,810	21,667,000	154,170	(우면동) (윤 02-3416-3777)
	우면	984	26.37	447	14	60	2,636,000	52,470	7,543,000	84,880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
	16	301	31.32	537	26	50	3,131,000	62,320	8,959,000	100,810	(우면동) (☎ 02-578-0503)
동작구	대방1	925	31.32	776	148	60	3,131,000	62,320	8,959,000	100,810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대방동) (급 02-824-9974)
			26.37	588	0	170	2,500,000	49,760	5,787,000	79,980	
금천구	금천구 독산	독산 1,226	36.54	98	0	30	3,464,000	68,950	8,019,000	110,820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38
			37.08	270	40	40	3,515,000	69,960	8,137,000	112,460	(하안동) (☎ 02-892-1651)
		40.32	270	42	40	3,822,000	76,080	8,848,000	122,290		

- 임대조건의 수급자 기준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임대조건의 수급자 이외의 기준 해당자 : 위의 수급자 기준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중계3단지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단지명이 동일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단지는 금회 모집하는 상기 형별 이외의 공급 형(전용면적을 달리하는 형이 있음)이 있습니다.
- 번동2·번동3·번동5·독산단지는 36형과 37형의 예비입주자를 통합관리 합니다.
- 강남3단지, 서초3단지는 국민임대가 혼재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등으로 수시로 감소되는 수치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SH공사와 상이함)

전용면적	~30m² 미만	30m²이상~32m²미만	32m²이상~39m²미만	39m² 이상~	
가구원수	1~2인가구	1~3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08. 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구분	입주자격
1순위	<ul> <li>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li> <li>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li> <li>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li> <li>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li> <li>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li> </ul>

구분	입주자격					
	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인 사람					
	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					
	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ul> <li>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li> <li>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li> <li>신청자의 직계존비속</li> <li>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등)</li> <li>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분리예정 세대원 신청> 안내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① 예비 가구구성 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②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원 수는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수로 신청하셔야 하며 가점(배점) 또한 분리하여 입주 할 세대원수에 대해서만 적용 합니다.
- ③ 신청 시 면적도 분리하여 입주할 가구원 수 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 게약자와 배우자는 분리 예정으로 신청불가하며,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도 중복입주로 인정 되어 신청 불가합니다

####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별로 월평균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0,0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가액에 포함되며 그외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 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 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li> <li>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li>토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자동차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금융 자산	<ul> <li>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 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li>「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li> <li>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금액으로 한다.</li> </ul>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4. 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개정 2017.10.12.>

###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순**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신청자 연령 높은자

추첨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구	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 (대상자)		
		<u>100점</u>			
1. 신청자의	1년 미만	22	▶ □지이크비디 여소티 기즈기가		
서울시	1~5년 미만 5~10년 미만	24 26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거주기간	3~10년 미년 10~15년 미만	28	(구한중축 골꼬의 성구는 세중축 이유구나 기산) 		
(30점)	15년 이상	30	-		
	40세 미만				
2. 신청자	40~50세 미만	21			
(만)연령	50~60세 미만	23	-		
(25점)	60세 이상	25			
	1~2인	24	<ul><li>▶ 신청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li></ul>		
3. 세대원수	3인	26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30점)	4인	28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		
	5인 이상	30	년 형제자매		
		15(유형 3가지)	<ul> <li>▶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이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ul> <li>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li> <li>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li> <li>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li> <li>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li> <li>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li> </ul> </li> </ul>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니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	.로 하되,	8(유형 1가지)	<ul><li>▶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li><li>·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li><li>·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li></ul>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7	<ul> <li>▶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li> <li>▶ 만65세이상 수급권자</li> <li>▶ 비수급자로서</li> <li>·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li> <li>·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세대원 포함)</li> <li>·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li> <li>·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li> <li>·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li> <li>·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li> <li>·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li> </ul>		
		4	<ul><li>▶ 비수급자로서</li><li>·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li></ul>		

# 5.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 08. 13.)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비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이름으로서명가능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정자 자필,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지장 ※ (주의) 새대구성원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됨			
공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 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통		
	주민등록표등본	<ul> <li>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li> <li>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추가 제출</li> </ul>	1통		

구비서류	비고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변등록표초본 ※ <u>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u>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해당자만 제출 >		1통
예비가구구성확인서 (세대분리예정자 모두 기재) <b>&lt;해당자만 제출&gt;</b>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계약자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 일부가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		1부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sup>※</sup>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홈페이지 참고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본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소득조사 생략)	주소지관할 보훈(지)청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앙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 령해야 함)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6.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 이하의 주택(20m'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7.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ul>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li> <li>●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li> <li>●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li>●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ul>
신청 자격	<ul> <li>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li>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li> </ul>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괴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신청 서류	<ul> <li>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입주대상 자 결정 및 계약 안내	<ul> <li>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편(계약안내문 등) 미수령으로 인한 미계약의 경우 본인과실로 인해 당첨이 취소됩니다.</li> </ul>
기타 사항	<ul> <li>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ul>

####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 득	<ul> <li>건강보험 보수월액</li> <li>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li> <li>(소득신고)</li> <li>장애인고용공단자료</li> <li>(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li> <li>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li> </ul>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 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 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별정 우체국연금,한국고용정보 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T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b></b> オール・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총자산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 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 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 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 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고저자리 ㄸㄴ 지귀ㅈ샤	
			임대보증금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등차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9. 2019년 모집공고 당락점수

LH 영구임대주택의 2019년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전용면적(가족수)	공급수	총신청인원	경쟁율	당락점수
서울수서	26(~2)	130	989	7.6	86
기술구시 	31(1~3)	70	900	12.9	88
ПООЦ	26(~2)	30	297	9.9	86
서울우면	31(1~3)	20	390	19.5	88
서울대방1	26(~2)	10	732	73.2	90
시호네이	31(1~3)	60	994	16.6	88
서울가양	26(~2)	30	204	6.8	86
기술기 Ö	31(1~3)	150	661	4.4	86
서울등촌1	26(~2)	230	785	3.4	86
시골등근1	31(1~3)	70	283	4.0	86
서오드초4	26(~2)	60	145	2.4	84
서울등촌4	31(1~3)	20	162	8.1	86
서오드초7	26(~2)	80	168	2.1	84
서울등촌7	31(1~3)	30	169	5.6	86
서울등촌9	26(~2)	66	120	1.8	82
시골등단9	31(1~3)	108	376	3.5	86
서울중계1	26(~2)	100	498	5.0	86
서울중계3	26(~2)	130	543	4.2	86
서울중계9	26(~2)	120	197	1.6	82
시물공세9	31(1~3)	120	453	3.8	86
서우위게1	26(~2)	100	283	2.8	85
서울월계1	31(1~3)	20	172	8.6	87
	26(~2)	150	667	4.4	86
서오베도?	31(1~3)	150	660	4.4	86
서울번동2	36(3)	10	71	7.1	88
	40(4)	80	39	0.5	-
서오베도?	31(1~3)	90	257	2.9	86
서울번동3	40(4)	60	34	0.6	-
	26(2)	40	167	4.2	86
서오버드리	31(1~3)	60	303	5.1	86
서울번동5	36(3)	15	140	9.3	88
	40(4)	90	65	0.7	-
7FLF2D1	21(~2)	10	64	6.4	86
강남3BL	29(~2)	10	429	42.9	88
서초3BL	26(~2)	5	289	57.8	90

### 13. 문의처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관련 상담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